



보도 일시	2022. 12. 27.(화) 11:30	배포 일시	2022. 12. 27.(화) 9:00
담당 부서	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 장승대 (044-215-5150)
		담당자	사무관 손주연 (jyeons@korea.kr)
담당 부서	국고국 출자관리과	책임자	과 장 정동영 (044-215-5170)
		담당자	사무관 김현주 (khj102@korea.kr)

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

-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-

- 정부는 12.27.(화)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「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을 심의·의결하였다.
-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1년부터 「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 제도 설명회」 등을 통해 발굴해 온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, 국유재산 사용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.
 - 주요 내용은 어업용 부속시설*에 대해서도 경작·목축용과 동일하게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%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,
 - * 어구 보관시설, 수산종자생산시설, 패류의 껍데기를 까기 위한 시설 등 어업에 필수적인 부속시설
 -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, 매각대금 및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기준*을 50% 낮추는 것으로,
 - * ①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 : 1천만원 → 5백만원 초과
 - ②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 : 1백만원 → 50만원 초과
 - 경기 둔화 및 지가 상승 등에 따라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또한,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 하되, 수의매수를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- 한편,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,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.
-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, 물납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과 관리비용을 가산하여 별도로 정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.
-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12월 30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.